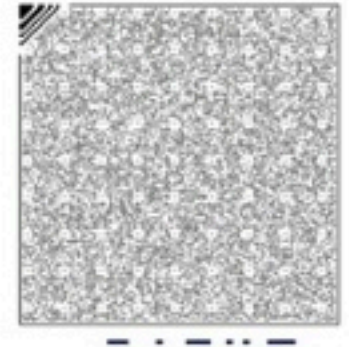




환경부



수신 수신자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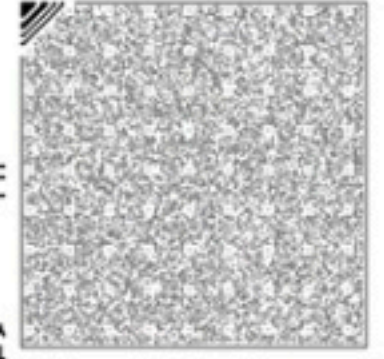
(경유)

제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관련 유의사항 알림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등에 따라, 폐기물을 사료화·퇴비화 또는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일명 ‘감량기’)가 설치·이용되고 있습니다.
2. 감량기의 사용은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지 감량 측면에서 바람직한 부분이 있으나, 최근 감량기 설치가 늘어나면서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되어야 함)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이 설치·이용되어 하수관거 막힘, 악취 유발 등의 문제를 유발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일부 지자체에서도 감량기 관련 업무에 혼선을 겪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이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니, 향후에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수리 등 감량기 관련 업무처리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배출수 방식 감량기(일명 미생물액상발효방식) 관련 : 감량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및 [별표5]제2호다목3) 등에 따라 설치·이용이 허용되는 것으로서,
 - 고형물이 재활용되지 않고 전량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방식은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서 허용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회수하는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제2호다목3)에서 정한 수분함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② 한국음식물처리기협동조합의 단체표준 인증 : 단체표준은 관련 제품을 관리하는 민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의 인증으로, 단체표준 인증을 받았다고 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 적합한 감량기임을 보증하는 것은 아님
 - ③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0.3. 환경부) 관련 : 가이드라인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보급 활성화를 위해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제작한 감량기 관련 설명서 성격임.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모호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 필요
 - ※ ex) 가이드라인 17p. 미생물 액상발효 방식의 경우 부산물에 대한 함수율 등의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오류

④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배출하도록 하고 있음

- 가정용 건조방식 감량기에서 발생된 부산물은 함수율이 25%이하로 소
있는 바, 가정 내 감량 실천 촉진에 필요한 배출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재활용·소각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일반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도록 허용할 수 있음



4.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감량기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제도 개선을 검토·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환 경 부 장 관



수신자 조달청장(서비스계약과장), 서울특별시(생활환경과장), 부산광역시(자원순환과장), 인천광역시(자원순환과장), 대구광역시(자원순환과장), 대전광역시(자원순환과장), 광주광역시(자원순환과장), 울산광역시(자원순환과장), 경기도지사(자원순환과장), 강원도지사(환경과장), 충청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환경안전관리과장), 전라북도지사(환경보전과장),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물환경과장), 경상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 경상남도지사(환경정책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자원순환과장)

주무관 **현세환** 행정사무관 **김종민** 과장 전결 2021.5.17. **김정환**

협조자

시행 폐자원에너지과-1341 (2021. 5. 17.) 접수